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85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윤건영・모경종・박지원

이기헌・신정훈・조계원

박선원 · 김영배 · 김병기

송기헌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병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막대한 규모의 선거 홍보물이 제작·배포되어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작된 선거공보는 총 5억 8천만 부로, 여의도 면적의 10배(29k㎡)이자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156,460km)였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작 된 선거벽보는 118만 부로, 이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면적의 11배(58,551 ㎡)이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848km)에 달했음. 2020 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 제작에 사용된 종이 무 게만 13,534톤(t)이었는데 이는 30년 된 나무 23만 그루를 베어낸 수준 이었음.

유권자의 집마다 우편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길거리에 게시되는 선 거벽보는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는 방법 외에 다른 규정이 없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친환경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작 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선 거벽보의 첩부 매수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선거운동 과정 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정한다" 를 "정하되, 제6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의 면수의 상한은 전자적 형태가 아닌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면수의 상 한의 두 배에 이르는 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발송통수이내의 범위에서 선거권자의 이동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 후단에 따라 제공받은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완료된즉시 이동전화번호를 폐기하여야 한다.

8 제6항에 따른 이동전화번호의 제공 사실 통보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제4호·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이동전화번호"로 본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500명에"를 "1천명에"로, "250명에"를 "500명에" 로, "100명에"를 "200명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65조의2에서"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 ①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제65조제6항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선거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선거구 안의 모든 선거권자의 이동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로부

- 터 2일 이내에 전자선거공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완료된 즉시 이동전화번호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이동전화번호가 없는 선거권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자선거공보를 수신 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전자선거공보를 인쇄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해당 선거권자가 속한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⑤ 전자선거공보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 ⑥ 전자선거공보를 작성할 경우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전자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매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5조제6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⑦ 이동전화번호의 제공 사실 통보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4호·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은 "전자선거공보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 ⑧ 제6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전자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선거벽보"는 "전자선거공보"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상벌(이

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⑨ 전자선거공보의 작성 주체, 게재 사항, 후보자공개자료에 관한 사항 및 접수 거부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제8항·제12항을 준용 한다.

제122조의2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5조의2에 따른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비용 및 발송비용 제25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 중 "제65조제1항·제2항"을 "제65조제1항(제65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으로, "선거공보"를 "선거공보 보·전자선거공보"로 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제1항제1호 중 "제4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호(제60조의3제8항, 제65조의2제7항 및 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당 또는"을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으로, "가상번호를 제공한"을 각각 "가상번호(제60조의3제8항 및 제65조의2제7항의 경우에는 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한"으로, "제5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호(제60조의3제8항, 제65조의2제7항 및 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하목 중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하목 중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2호(제60조의3제8항 및 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수"를 "휴대전화 가상번호(제60조의3제8항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번호.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 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	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 ~ ⑤ (생 략)	운동)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
	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예
	비후보자홍보물을 전자적 형태
	로 작성할 수 있으며,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동통신사업자에게 발송통수 이
	내의 범위에서 선거권자의 이
	동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여
	야 하며,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동전화번호를 제
	공하여야 한다.
<u><신 설></u>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 후
	단에 따라 제공받은 이동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
	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문자메
	시지로 발송하여야 하며, 문자

<u><신 설></u>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 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 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 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u>정한다</u>.

메시지의 발송이 완료된 즉시
이동전화번호를 폐기하여야 한
<u>다.</u>
⑧ 제6항에 따른 이동전화번호
의 제공 사실 통보 및 이동통
신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관하
여는 제57조의8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제4호·제5호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문자메시
지 발송"으로, "정당"은 "선거
관리위원회"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는 "이동전화번호"로 본
<u>다.</u>
<u>⑨</u>
<u>정하되, 제6</u>
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
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면수
의 상한은 전자적 형태가 아닌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면수의 상

제64조(선거벽보) ① 選擧運動에 지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候補者 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 한다) • 姓名 • 記號(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 政黨推薦候 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 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 • 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 國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學歷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 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 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 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 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 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 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 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 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

<u>여야 한다</u> .
제64조(선거벽보) ①

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 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政見 및 所 屬政黨의 政綱・정책 그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 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 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 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 · 도의원후보자 명 단을,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 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 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 여 洞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 에 1매, 물에 있어서는 인구 25 0명에 1매, 面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 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 천명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 ② (생 략)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 저

<u>1천명</u>			
<u>에</u> <u>50</u>			
0명에			
200명에			
② ~ ⑫ (현행과 같음)			
∥65조(선거공보) ①			

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 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 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 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 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 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 • 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 야 하다.

② ~ ⑭ (생 략) <u><신 설></u>

<u>이 조 및 제65</u> 조의2
에서
② ~ ⑭ (현행과 같음)
세65조의2(전자선거공보) ① 후보
자가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선거공보
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제65조제6항의 규
정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u>야 한다.</u>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선거 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한 다)가 제출된 경우 이동통신사 업자에게 선거구 안의 모든 선 거권자의 이동전화번호의 제공 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 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동 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번호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 자선거공보를 문자메시지로 발 송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완료된 즉시 이동전화 번호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이동전화번호가 없는 선거 권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자 선거공보를 수신할 수 없는 선 거권자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전자선 거공보를 인쇄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해당 선거권자가 속한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전자선거공보는 제65조제2 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⑥ 전자선거공보를 작성할 경 우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전자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 ·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 한 매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는 제65조제6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 에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⑦ 이동전화번호의 제공 사실 통보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금 지 행위에 관하여는 제57조의8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4호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 렴 등"은 "전자선거공보의 문 자메시지 발송"으로,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 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1. • 2. (생략) <신 설>

(8)	제64	1조기	네4항-	무터	제7	'항끼	-지
<u>는</u>	전지	<u></u> 선기	거공도	<u>-</u> 에	이틑	를 준	용.
			경우				
<u>"전</u>	자선	거공	7 보"5	<u>۔</u>	" >	첩부'	'는
"발	·송".	으로,	" 计 "	격을	넘기	식나	미
<u>달</u>	하는"	슨	"규조	를 을	넘는	=" <u></u>	로,
<u>"경</u>	력 •	학리	년 · 호	남위 ·	상	벌(ㅇ	하
<u>"</u> 경	럭등	"o] i	<u> 라</u> 한	·다)"	은 "	경력	등
<u>0] ı</u>	+	후.	보자전	성보급	공개/	자료'	'로
<u>본</u> [<u> </u>						

⑨ 전자선거공보의 작성 주체, 게재 사항, 후보자공개자료에 관한 사항 및 접수 거부에 관 하여는 제65조제1항ㆍ제8항ㆍ 제12항을 준용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3)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65조의2에 따른 전자선 거공보등의 작성비용 및 발송 3. ~ 7. (생략)

④・⑤ (생략)

-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생 제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 1의2. (생략)
 - 1의3. 제64조제1항·제9항, <u>제6</u> <u>5조제1항·제2항</u>, 제66조제1 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u>선거공보</u> 또는 선 거공약서를 選擧運動을 위하 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 2. ~ 8. (생 략)
 - ③ ~ ⑤ (생 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

3.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현
행과 같음)
②
· 1.•1의2. (현행과 같음)
1의 3
·
제65조제1항(제65조의2제9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u>다), 같은 조 제2항</u>
<u>선거공보·전자선</u>
거공보
2. ~ 8. (현행과 같음)
3 ~ ⑤ (현행과 같음)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1

비용

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2제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 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제4호(제60조의3제8
항, 제65조의2제7항 및 제108
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u> 우를 포함한다)</u>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또
는
<u>가상번호</u>
(제60조의3제8항 및 제65조의
2제7항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u>번호)를 제공한</u>
제5호(제60조의3제8항, 제65
조의2제7항 및 제108조의2제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u>한다)</u>
<u>가상번호(제60조</u>
의3제8항 및 제65조의2제7항
의 경우에는 이동전화번호)를
<u>제공한</u>

- 2. ~ 5.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파. (생 략)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 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 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 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 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 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108조의2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하여 요청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 ₁ .
<u>利</u> 2
호(제60조의3제8항 및 제1
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

<u>수</u> 를	초과하(여 휴	-대전화
가상병	호를 제	공하	자

 는 경우를 포함한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60조의3제8항

 의 경우에는 이동전화번

 호.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수-----

거.・너. (생 략) 2. ~ 4. (생 략) ④·⑤ (생 략) 거.・너. (현행과 같음)2. ~ 4. (현행과 같음)④・⑤ (현행과 같음)